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1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이병도, 강석주,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도문열,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신복자, 오금란,  
왕정순, 유만희, 이상욱,  
이상훈,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임종국, 정준호, 한 신,  
홍국표 의원(31명)

##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업무과다와 현장에서 겪는 언어·물리적 폭력, 인권침해 등에 의해 심각한 소진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보호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 유지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의 구체적 범위를 제한적으로 명시한 기존 목적 규정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7호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등 처우 및”을 “처우를 개선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u>보수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등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u>&lt;신설&gt;</u></p> <p>7. (생략)</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 ----- ----- ----- <u>처우를 개선하고</u> ----- ----- ----- -----.</p> <p>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근거를 명확히 명시한 것으로 비용발생의 여지가 있어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기추진사업<sup>1)</sup>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건강검진(신체적 건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음건강(정신적 건강) 또한 지원하므로 기추진 사업으로 판단됨

#### 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25년 공모 선정)
- 소요예산 : **653,303천원** (검진비 607백만원 + 전담인력 인건비 등 46백만원)

#### ② 마음건강 지원사업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25년 공모 선정)
- 소요예산 : **200,000천원** ('24년과 동일)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4개 세부추진 과제(신설 2개)

분 야	사 업 명	주 요 내 용
① 인건비	1. 시비지원시설	- 봉급 인상률 3%, 969개소 10,367여명
	2. 국시비지원시설	- 봉급 인상률 3%, 958개소 5,939여명
	3.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 적용
② 휴 가	4. 장기근속휴가	-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일 유급휴가 부여
	5. 유급병가	-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0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6. 가족돌봄휴가(확대)	-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전 종사자에게 유급휴가 3일 부여
	7. 건강검진휴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부여
	8. 퇴직준비휴가(신설)	- 서울시 소관 시설 15년 근속 정년퇴직자에게 연 10일 유급휴가 부여
③ 부가급여	9. 복지포인트	- 정규직원 : 10호봉 이상 400P, 10호봉미만 300P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비정규직 (보조사업 전담인력) 등 : 300p
	10. 건강검진비 지원(확대)	-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만 30세 이상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주기로 지원
	11. 마음건강 지원	- 직장내 스트레스 등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12. 연가보상비 지원(신설)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종사자에게 연 3일 범위 내 지급 가능
④ 처우개선 지원사업	13. 대체인력 지원(확대)	-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14. 단체연수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비 지원

※ 자료 : 서울시 복지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복지정책과-1454, 2025. 1. 16.)